

**제1회 이사회**

2014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한국건축설계교수연구회와의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감사규정 개정의 건, 윤리규약 개정의 건,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실무교육운영규정 개정의 건,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2014년도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변경의 건, 협회 50년사 발간위원회 설치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한국건축설계교수연구회와의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의 건  
-한국건축설계교수연구회와의 MOU를 원안대로 체결(2014년 1월 21일)하기로 함.

**| 부의안건 |**

- 제1호의안 : 감사규정 개정의 건  
-감사규정 중 제4조 제1호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삽입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다만, 정기감사 일정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호의안 : 윤리규약 개정의 건  
-제48회 정기총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별표3에서 윤리규약 제11조(협회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훼손)의 위반에 따른 징계수준을 강화(권리정지 6개월→권리정지 12개월 또는 제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사실무교육운영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인천건축사회 회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건축사회 총회를 거쳐 본협회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려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2014년도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협회 50년사 발간위원회 설치의 건  
-회장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2014년 1월 15일)에서 정회원 월정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논의됨에 따라 건축문화발전기금에서 3억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2014년도 제2회 이사회를 2014년 2월 12일(수),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계획(안)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 :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의 건  
-토론자 외에 플로어에서 이사 2인, 시도회장 4인 정도가 발언하도록 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참석회원들(2,500명 정도)이 같은 머플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타 대처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제5회 정책위원회**

제5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의 건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협회 조직체계 개편'을 협회발전분야 과제로 추가  
▷ '건축 관계전문기술자제도 개선(3~4)' 과제 내용 수정  
▷ '건축사 보수대가 정착(2~3)' 과제 내용 수정  
▷ '건축 디자인빌더 제도 도입' 과제 추가  
▷ '건축사 협동조합 설립 추진' 과제 내용 수정

**| 회장 건의 또는 정책반영 요청사항 |**

- 건축물에너지평가제도 관련  
-건축물에너지평가제도는 건축물의 디자인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너지 효율등급)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건축디자인 요소와 함께 에너지 효율등급이 평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시험이 설비위주의 문제출제로 건축사들이 취득하기가 어려워져 동 제도가 설비위주로 치우칠 우려가 있음.

**제7회 국제위원회**

제7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ARCASIA Zone C 부회장 후보에 대한 건  
-국제위원회 의견 취합 후 회장께 최종결정 일임  
-후보 추천

- 제2호 : UIA 4지역 이사 후보 및 UIA 임원추천에 대한 건  
-국제위원회 의결된 UIA 4지역 이사 후보로 신춘규 자문위원의 추천(이근창 자문위원)이 있었으며, 이근창 자문위원을 추천 및 최종결정은 회장께 위임.
- 제3호 : 국제위원회 인력풀 구성 및 각 국 별 담당위원회에 관한 건  
-인력풀 구성 전담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인력 제안, 접촉 등 관련 내용을 일임토록 함.(담당위원 : 심형섭, 이승석 위원)
- 제4호 : 명예회원 수여 / 수상 검토에 관한 건  
-2014년도 명예회원 수여 대상자  
▷일본건축사협회(JFABEA) 회장 미이소 키요노리  
▷미국건축사협회(AIA) 신임회장 Helene Dreiling  
※ 제48회 정기총회 시 수여  
-차기회의 시 세부적 검토를 진행토록 함.

**| 기타사항 |**

- 제48회 정기총회 해외단체장 초청  
-초청대상자 : 일본건축사협회(JFABEA) 회장 미이소 키요노리  
미국건축사협회(AIA) 신임회장 Helene Dreiling  
-담당위원 : 강호원 자문위원, 오동희 위원(일본)  
강승우 위원, 이승석, 심형섭 위원(미국)  
-초청 시 효율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가 필요
- AIA 뉴욕 순회 전시회  
-담당위원이 소요 예산을 요청 및 검토 후 추후에 개최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함.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안)
- 한중일건축사협회의 개최에 관해서는 TF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함.  
-TF : 김성민, 오동희 위원

**제3회 기획위원회**

제3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제1호 : 2014년도 임시예산안 심의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제출한 2014년도 임시예산안 중 일반회계 임시예산안에 2014년 1~2월 감리제도 개선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경비(8,500만원)를 추가 반영하여 심의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회 계 구 분	2014. 1~2월 세입/세출예산(안)	〈참고〉 2013년 예산현황		
		예산총액	2개월 평균예산	
<b>일 반 회 계</b>	<b>760,000,000</b>	<b>5,185,000,000</b>	<b>864,166,000</b>	
건축연구원 회계	75,000,000	591,730,000	98,621,000	
기금관리운용회계	320,000,000	2,024,000	337,333,000	
회 관 관 리 회 계	328,000,000	1,979,500,000	329,916,000	
장 학 회 회 계	32,600,000	42,700,000	7,116,000	
건축자재전시사업회계	100,000,000	675,200,000	112,533,000	
특별회계 위탁 업무	건축사 업무실적 기술자경력관리회계	150,000,000	1,132,500,000	188,750,000
	건축사시험 회계	35,650,000	884,228,000	147,371,000
	APEC 등록건축사회계	4,250,000	26,200,000	4,366,000
	건축사 등록업무 관리회계	75,000,000	1,930,200,000	321,700,000
	건축사교육원 회계	96,000,000	881,200,000	146,866,000
<b>특별회계 합계</b>	<b>1,216,500,000</b>	<b>10,167,458,000</b>	<b>1,694,572,000</b>	
<b>총 계</b>	<b>1,976,500,000</b>	<b>15,352,458,000</b>	<b>2,558,738,000</b>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의 특별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협회의 일상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비대위의 소요경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금 사용의 경우 총회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우선 일반회계 임시예산에 반영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비대위 업무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파악하여 기금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총회 승인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해당예산에 대하여 보전한다는 단서를 명시하여 승인받을 필요가 있음.(김한진 위원등 위원다수)

-비대위 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기밀성 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나, 기금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비대위 활동경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 별도로 상정해야 할 사항임.(김의중 위원장)

- 제2호 : 2014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  
-각 위원회 및 사무처로부터 요구된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함. 2014년도에 세수가 크게 증가할 요인이 없음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발주처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방안에 관한 건

건축사명	내 용	결 과
윤해상	용역수행 중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합의함에 따라 종결
임종대	용역수행중 발주처로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설계용역 계약을 타절하고자 하니 정산서를 보내달라는 통보를 받아 정산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음.(직접 참석하여 설명 질의응답 함)	본인이 협회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급명령 등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함. (위원장이 자문변호사 연결)
김세정	발주처에서 계획설계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용역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함. 이후 발주처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보증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협회자문변호사에게 법리 검토 후 당사자에게 제출 하고 추후 협의

● 제2호 : 건축사 무자격자 “설계”용어 사용의 범위에 관한 건

-공공건축가 제도에서의 모순점 개선 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 제도에서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설계’는 완공된 건축물에 국한하여 건축사만 사용토록 하고, 교수 등 무자격자는 ‘계획안’,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사지, 건축문화신문에 ‘설계자 : ○○○건축사+○○○교수’로 표기하는 부분부터 시정이 필요함.

**제10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제10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실무교육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강사로 지급기준에 특별 교육 시행에 대한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차기 이사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건

-사이버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문제점들에 대해 소위원회회를 통해 재 검토 후 차기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우리협회, 한국건축설계교수회와 MOU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1월 21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사)한국건축설계교수회와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사)한국건축설계교수회는 ▲각 기관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잡지, 서적 등의 교환을 통한 정보교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이번 (사)한국건축설계교수회와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서 건축물의 품질향상, 건축기술 발전 그리고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년도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1월 15일 건축사회관에서 '제1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사법 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사감리제도 개선 진행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의 건에 대해 협의했다.